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8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황	8
※ 참고자료2: 한국에너지재단 주요 현안	9
※ 참고자료3: 한국에너지공단 운영비 예산안 사례(2026년 예산 기준) ...	10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0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 재원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저금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 및 공통경비를 충당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의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사업 지속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에너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실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재단을 법인으로 하고, 재정지원 근거, 출연 또는 기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8(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 소외 계층의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을 위하여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이하 “에너지복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에너지복지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에너지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에너지복지 관련 조사·연구 4. 에너지복지 관련 국내외 협력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현행	개정안
	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 7.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기관·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 8.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언 9.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10.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에너지복지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제16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본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 확충을 위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출범하여 2017년 3월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2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에너지재단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6 예산	주요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08,575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 시공 및 보일러·에어컨 등 물품 지원
민관 에너지 협력사업	2,932	- 에너지 전환: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 등 - 에너지 효율: 사회복지시설·가구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 및 고효율기기 지원 - 에너지 공급: 혹서·혹한기 계절나기 지원사업,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 - 이익 공유형: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으로 환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96	- 취약계층에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교체 지원
WEC 한국위원회 사업	717	- 국내 에너지기업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 제공, 국제사회에서 국내 에너지업계 입장 대변 및 홍보

자료: ALIO 2026년 1분기 정기보고서

다만, 현행법에 에너지재단에 대한 출연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위탁사업비 등을 통해 인건비를 일부 확보하고, 그 밖의 부족분은 출연금¹⁾ 수익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나,

1)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NOC,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출연(출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현재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2018년 사옥 매입(90억원)에 따른 출연금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2026년 이후로는 출연금 고갈²⁾로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에너지재단 운영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평균
■현원 (기간제포함)	45	52	56	56	50	51
■운영비 결산	3,231	4,075	3,818	3,898	3,710	3,746
- 인건비	2,496	2,834	3,021	3,222	3,176	2,950
- 기타	735	1,241	797	676	534	797
■운영비 재원	3,231	4,075	3,818	3,898	3,710	3,746
- 사업비	1,392	1,266	2,042	2,736	3,044	2,096
- 출연금	1,839	2,809	1,776	1,162	666	1,650

자료: 한국에너지재단

이에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단 등 다른 기관의 사례³⁾를 참고하여 재단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2) 2006년 에너지재단 설립 당시 219억원의 출연금을 모집하였으며, 이후 별도 출연금은 없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 출연 외에도 법인·개인·단체의 자발적 출연 및 기부를 허용하여 민간 재원을 연계·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복지 수요의 다양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기획예산처는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 간의 기능 조정 등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재단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에너지재단의 기능 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통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각 부처 의견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에너지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42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목적

-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탄소중립 기본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고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5-014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공(단열·창호·바닥) 및 물품(보일러, 에어컨) 지원
 - 냉방지원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 난방지원 :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예산(백만원)	주요내용(실적)
'22년	86,898	-난방지원 : 29,444가구, 시설 326개소 -냉방지원 : 10,017가구
'23년	99,599	-난방지원 : 35,386가구, 시설 202개소 -냉방지원 : 15,140가구
'24년	108,333	-난방지원 : 36,977가구, 시설 272개소 -냉방지원 : 18,034가구, 시설 532개소

- (재무 악화) '06.12 에너지복지를 위해 설립 후 출연금 219억 원의
이자수익(연간 1.8~6.6억) 및 정부 사업 인건비 등으로 운영
 - '18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 증가, '18년 사옥 구입(90억 원)에 따른 출연
금 운용수익 감소로 출연금 소진 및 '26년 적자 예상

- (중복 지적) 에너지바우처 에너지공단과 효율개선사업 재단이 에너지복지
담당하는 것이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이라는 국회의 지적*
 - * 공단과 통합 위한 재단 조직진단 필요('23 국감, ^{국힘} 이철규, 이인선 의원)
 - 에너지복지 업무 중복성 제거 및 민간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복지 추진
체계 개편 용역 완료('24.10월)
 - * (용역 결과) 여러 대안 중 정부 사업(바우처 + 효율개선사업)은 에공단
으로 일원화하고 재단은 민간협력사업 강화 확대하는 방안 제시

- (이사장 현황) 전임 이사장 수당 부당 수령으로 사임 후('23.9)
이태동 교수 선임('26.6)

참고3

한국에너지공단 운영비 예산안 사례(2026년 예산 기준)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한국에너지공단지원	83,506	79,061	79,061	82,842	82,842	3,781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예 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506	83,506	83,506	-	-	79,061	79,061	49,376 [49,111]	79,061	49,376 [49,111]	-	-	82,842
한국에너지공단지원	83,506	83,506	83,506	-	-	79,061	79,061	49,376 [49,111]	79,061	49,376 [49,111]	-	-	82,842
○ 비목별 분류(합계)	83,506	83,506	83,506	-	-	79,061	79,061	49,376 [49,111]	79,061	49,376 [49,111]	-	-	82,842
·기관운영출연금(350-01)	24,491	24,491	24,491 [24,491]	-	-	25,135	25,135	20,552 [20,552]	25,135	20,552 [20,552]	-	-	26,806
·사업출연금(350-02)	59,015	59,015	59,015 [59,015]	-	-	53,926	53,926	28,824 [28,559]	53,926	28,824 [28,559]	-	-	56,036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26년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지출예산 중 자체수입예산을 제외한 차액 82,842백만원을 출연 (총지출 115,111- 자체수입 32,269)

<총지출> ('25) 109,277 → ('26) 115,111백만원(+5,834백만원)

○ 사업비 : ('25) 53,926백만원 → ('26) 56,036백만원(+2,110백만원)

- 에너지진단, 에너지수요관리, 열사용기자재검사, 수요관리시책운영, 에특회계 및 융자금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건물부문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교육, 에너지절약행사 등 16개 분야 : ('25) 46,457 → ('26) 48,957백만원(+2,5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보급, 신재생에너지기획,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4개 분야 : ('25) 7,469 → ('26) 7,079백만원(△390백만원)

○ 인건비 : ('25) 51,348 → ('26) 54,273백만원(+2,925백만원)

○ 경상비 : ('25) 2,462 → ('26) 3,211백만원(+749백만원)

○ 예비비 : ('25) 1,541 → ('26) 1,591백만원(+50백만원)